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61호



www.namwon.go.kr

제61호 2023. 12. 15(금)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2479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1

회					
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공고 제2023 - 2479호

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공고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개선 ·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O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
 -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용어 현행화
-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안 제13조제4항)

- 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이 20일로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조정
-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27조)
- 3. 입법예고기간 : 2023. 12. 11.~2023. 12. 31. (20일간)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55738
 - (2) 주 소: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485), 팩스(063-620-6719),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붙임

4. 기 타

3. 의 경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시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남원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변경, 자율관리협정 등 (안 제1조~안 제8조)
- 나. 주민협의회, 정비 지원, 외국어 병기 등 규정(안 제9조~안 제12조)
- 다. 심의위원회 규정 (안 제13조~안 제14조)

시

- 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 절차 등 규정 (안 제15조~안 제18조)
-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제거된 광고물등 관리, 행정대집행 사항 규정(안 제19 조~안 제22조)
- 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수료, 과태료 등 규정 (안 제 23조~안 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 ~ 2023. 12.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

하는 경우

-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② 영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2.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

户

入

고물등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구멍 뚫기)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 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入

-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음.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 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음.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 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간판표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간판표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 3. 광고물등의 유지 · 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 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1.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임차권자
 -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 디자인 관련 전문가
 - 3.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③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 ④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⑨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제26조제2항 각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 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
 -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
 -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북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
 -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이 경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
 -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음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지키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혜택 방안을 마련할수 있다.
-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 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 2. 광고물등의 디자인
 -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정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 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

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入

- ⑧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 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 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의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에 부치도록 한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별지 제5

호서식)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며, 옥외광고물허가권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위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무실
 -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발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 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

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위탁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지정서(별지 제1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있다.
- ⑧ 수탁자는 현수막의 게시수수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매 분기별로 정 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과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 3. 위반 장소 및 위치
 -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 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 등은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 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 2. 교육 대상자
 - 3. 교육 실시방법 절차 및 비용
 -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수 있다.
-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이수대 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

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한 경우
 -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 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3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m² 미만	
- 2m² 미만	20만원
- 2m² 이상 3m² 미만	30만원
- 3m² 이상 4m² 미만	40만원
- 4m² 이상 5m²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m² 이상 6m² 미만	55만원
- 6m² 이상 7m² 미만	65만원
- 7m² 이상 8m² 미만	75만원
- 8m² 이상 9m² 미만	85만원
- 9m² 이상 10m²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m² 이상	200만원
- 2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m² 미만	
- 2m² 미만	20만원
- 2m² 이상 3m² 미만	30만원
- 3m² 이상 4m² 미만	40만원
- 4m² 이상 5m²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m² 이상 6m² 미만	55만원
- 6m² 이상 7m² 미만	65만원
- 7m² 이상 8m² 미만	75만원
I	

- 8m² 이상 9m² 미만 - 9m² 이상 10m² 미만 3) 연면적 10m² 이상 20m² 미만 - 10m² 이상 12m² 미만 - 12m² 이상 14m² 미만 - 14m² 이상 16m² 미만 - 16m² 이상 18m² 미만 - 18m² 이상 20m² 미만 - 18m² 이상 20m² 미만 4) 연면적 20m² 이상 - 2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 1m² 이상 2m² 미만	40만원
- 2m² 이상 3m²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10 0 0
- 3m² 이상 3.5m² 미만	55만원
- 3.5㎡ 이상 4㎡ 미만	- 65만원
- 4m² 이상 4.5m² 미만	80만원
- 4.5m² 이상 5m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m² 이상 6m² 미만	110만원
- 6㎡ 이상 7㎡ 미만	130만원
- 7m² 이상 8m² 미만	150만원
- 8m² 이상 9m² 미만	170만원
- 9m² 이상 10m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
- 1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m² 미만	30만원
- 2m² 이상 3m² 미만	35만원
- 3m² 이상 4m² 미만	40만원
- 4m² 이상 5m²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m² 이상 6m² 미만	55만원
- 6m² 이상 7m² 미만	65만원
- 7m² 이상 8m² 미만	75만원
- 8m² 이상 9m² 미만	85만원
- 9m² 이상 10m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m² 이상 18m² 미만	170만원
- 18m² 이상 20m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m² 이상 25m² 미만	210만원
- 25m² 이상 30m² 미만	230만원
- 30m² 이상 35m²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 40m² 이상 45m² 미만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m² 이상	300만원
- 5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m² 미만	3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연면적 20㎡ 이상	7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m² 미만 30만원 - 연면적 5m² 이상 10m² 미만 50만원 - 연면적 10m² 이상 15m² 미만 60만원 - 연면적 15m² 이상 20m² 미만 70만원 - 연면적 20m² 이상 80만원 - 2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관광안내도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m² 미만 150만원 - 연면적 10m² 이상 160만원 - 1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m² 미만 - 1m² 미만 10만원 - 1m² 이상 2m² 미만 20만원

29만원

- 2m² 이상 3m² 미만

나) 연면적 3m² 이상 5m² 미만

시

- 3m² 이상 4m² 미만

- 4m² 이상 5m² 미만

다) 연면적 5m² 이상

- 5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 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 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 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고
신규 교육 보수교육	6시간 3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법·령·조례 제·개정 시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자가 아닌 자도 가능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 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 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m² 이하	3,000원
- 면적 5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m² 이하	30,000원
- 면적 5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m² 이하	15,000원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1,000원 8,000원
	0,000 ਦ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m²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m²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m² 이하	3,000원
- 연면적 1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3,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1건)	3,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3,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 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 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 의 전액을 적용하다.
-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바. 공연간판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시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 하여 산정한다.
-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사.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차.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 배를 적용한다.
- 카.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 타.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m² 이하 나) 면적 3m² 초과 5m² 이하 다) 면적 5m² 초과 10m² 이하 라) 면적 1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3) 벽보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보

	1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	법 제20조		'			
입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의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3	1 ¹	만원에 1일째부	터		
경우		계산하여 1	일마다 3천원을	·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10 ¹	만원에 31일째 ⁼	부터		
90일 이하인 경우		계산하여 1	일마다 1만원을	·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70 ¹	만원에 91일째 ⁼	부터		
경우		계산하여 1	일마다 2만원을	·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	법 제20조					
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	법 제20조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법 제20조	29만원	49만원	99만원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2항	_	_	_		

제61호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제3조제1항 관련)

1		광_	고주(옥외	광고사입	섭자)					광고물등	의 내용				관리자		18	19
번	② 성	③ 생	④ 업	⑤ 전	⑥ 주	① 요	8 종	9 ^	10 17	① ₩	12) II	(13) 라	①4) 준	①5 성	⑥ 주	① 전	변 변	Щ
		년	소	화		어디어 라이그 첫 5페이메디五기어				시	시	고	공			화	경	
		월		번		지 블 등				위	기	내	일			번	사	
호	명	일	명	호	소	록 번호	류	량	격	치	간	용	자	명	소	호	항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제61호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남 원 시 장

보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제61호

전단 신고필

보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00

. . 까지 00장 배포

남 원 시 장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남원시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별지 제4호서식]

	•	간판표시	계획시	(제7조	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주 소								
(건축주)	생년월일			전화번호	-				
	건축위치								
건축물	지하 층	건축물	2	용 도 별		시설:	m²,	시설:	m²
	지상 층	연면적	m²	바닥면적		시설:	m²,	시설:	m²
시키다	성 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	
설계자	사무소			, , = , =	,			,	
	<u>주</u> 소 종류	 수링	Ŀ			 규격(m)		
	 가로형-1 (입체형)	l c) 	가로 :	세로 :	<u> </u>			
	가로형-2 (판류형)			가로 :	세로 :	두께 :			
	가로형-3 (건물명)			가로 :	세로 :	두께 :			
	세로형-4 (건물명)			가로 :	세로 :	두께 :			
	돌출간판			가로 :	세로 :	두께 :			
옥외광고물	지주간판			가로 :	세로 :	높이 :			
표시	옥상간판			가로 :	세로 :	높이 :			
				가로 :	세로 :	두께 :			
				가로 :	세로 :	두께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주 재료								
	전기시설 사용여부	여 , 부		종류	네온, LE	ED, 형광등	,백열등 기	기타	
	색채								
기타									
50 at 71 = 0		0017171101 -	l - 11 - 1 - 1		=11.00=			0 0 7 7 7	5 6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	물 등 심의	리신청서	(제14	소제3형	강 관련	벌)	
	성 명			생 년	월 일			
광 고 주	업 소 명			전 회	· 번 호			
	주 소							
	광 고 물 설치장소						()
광 고 물 심 의	광고물 종류 (사용조명)	()	수량		신 청 구 분	신규	, 변경
신청내역	광 고 물 규 격(m)				조 물 :이(m)		·	
	광 고 내 용							
	성 명			업 :	소 명			
시공업소 (광고업자)	생 년 월 일			전 화	· 번 호			
(0十日刊)	주 소		-					
	건 축 주			준 공	년 도			
건 축 물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신 국 골 현 황	용 도 지 역			용 도	지구			
	건 물 규 모	대지면적(건물층수(지하	m²), 층, 지상		건축면적(건물높이(m²) m²)	
주변상황								
	외광고물 등의 관리 난 심의를 신청합니다		진흥에 관한 조	례」제14	조제3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옥	윾외광고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원시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 심	구비서류 : 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 음							

(앞 쪽)

[별지 제6호서식]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제16조제1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연장[]변경				
광고물등의 혀	거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 쪽)

검시	·l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는	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	용자재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기호구군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T3^[^[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톰 발생 등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	' 설비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u>.</u>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C	o ö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인위적 상황 기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i>-</i>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제16조제1항 관련)

1	2		신청자		6	7)	8	9	10	(1)	(12)		검사자		16
신	신	3	4	(5)	광고	광고물등	표시	광고물등	검	검	검	(13)	(14)	(15)	비
청	청	성	업	주	물등 허가	의	위치	의	사	사	사	소	직	성	
번	일		소		일자 (허가	종류	또는	규격	일	구	결				
<u>호</u>	자	명	명	소	번호)		장소		자	분	과	속	명	명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제61호	시	보	2023. 12. 15(금)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제18조제3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성명	생년월일						
선청자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와 옥외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		수수료					

제61호	시	上	2023. 12. 15(금)

[별지 제9호서식]

제61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18조제4항 관련)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OIEFJIJL	
경합경 도세시		위탁기간	·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제18조제6항 관련)

가로 6cm x 세로 8cm 규격

제61호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남 원 시

< 뒤 쪽 >

속: 소

직 위: 성

생년월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 사원임을 증명함

> 월 년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신청서

보

(제19조제4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신청자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u>'</u> 전화번	호
관리에 대한 위투	ł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수수료
- 기비서 듀 -	 신청자(기관단체) 자기소개서 1부.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없음
		210mm > 207mm[이HL요 TL 60g/_i/ TL하오프)]

[별지 제12호서식]

제61호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지정서

(제19조제5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대표자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	호
위탁기간		
「남원시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13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보관 관리대장

(제21조제3항 관련)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9) 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

보

(제21조제4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성명	생년월일
인수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과고내요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제61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보

(제21조제5항 관련)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성명
수강자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시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제21조제5항 관련)

	2	3	4			
① 번 호	교 육	교 육	소 속	⑤성 명	⑥생년월일	비고
	과정명	수료일자	업소명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보

(제25조제1항 관련)

	(120 112 0	: E/
제 호		처리기간 30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	<u> </u>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구비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투	보.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18호서식]

제61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25조제2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붙임 주요개정 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조항 삭제

혅 햀 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ㅈ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 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 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 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 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 야 한다.
-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 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삭 제>

정

아

개

<삭 제>

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시

-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 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 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 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 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 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 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다 제 운영) <삭 제> 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 물을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

- 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
-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 된 전단지 제외)
- 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 고물
-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 <삭 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제11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

○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광고물의 정비 지원 등 정비

시

	0 , , 2 0 0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 관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 관
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	리) ①
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	
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게시대에 <u>표시기간</u> 은 1	2 <u>표출기간</u>
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	
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	
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	
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u>표시신청</u> 이 표시 가능한 수	3. <u>표출신청</u>
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	
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	
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	
여 공표하여야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4
당하는 사항은 <u>표시</u> 할 수 없	<u></u> 班출
다.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략)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 상용도) (생략) <신 설>

시

① ~ ③ (생 략) <신 설>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 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 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 는 간판표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간판표 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옥 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지체 없 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 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 을 지급할 수 있다.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규정 등 정비

혉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의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구성·운영) ①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 (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생 략)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 계획 • 건축 • 디자인 • 조명 •

개 정 안

----- 심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되, -----

----- 앉아야

- 1. 옥외광고 · 교통 · 환경 · 도시 계획・건축・디자인・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 ·도시계획·건축·디자인· 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 련분야 전문가
-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워

시

-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 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 · 교통 · 환경 · 도시계획 건축・디자인・조명・청소 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 문가
-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삭 제> 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 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 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 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다.

보

<신 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u>발생일</u>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이 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u>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한정하여</u>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한다.

<신 설>

<u>\(\frac{\dagger}{\dagger}\)</u>
<u>발생일</u>
로부터 20일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
<u>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u>
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
<u>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u>
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
<u>을 수 있다.</u>
<u>⑦</u>
<u>3명 내지 5명</u>
⑧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신 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② (생 략)

시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메일, 서면, 화상회 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 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 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 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 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 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옥외 광고물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며. 옥외광고물허가권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위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 계 법령 등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시장에게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 전문가 •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옥외광고물허가 권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남원시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u><삭</u> 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에
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안하
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
친 경우

○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미가입자 과태료 신설 (별표 6)

보

○ 별지서식 등 정비

붙임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 ·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시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 거나 설치한 자
-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자
-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16. 1. 6.>
- 4. 삭제 <2016. 1. 6.>
-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入

-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시
- ·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 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 7. 9., 2015. 12. 31.,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

-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 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4.>
-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신설 2021, 5, 4.>
 -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 2. 제3항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본조신설 2011. 10. 10.][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 10. 10.>]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 한 사항
-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
-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본조신설 2011, 10, 10,]

[종전 제2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 10. 10.>]

시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 2. 광고물등의 유지 관리 및 감시 활동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9.]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 7. 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10.] [종전 제2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 10. 10.>]

入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 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7. 6.>

-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 ·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 문개정 2011. 10. 10.] [제목개정 2016. 7. 6.]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 10, 10.>]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 는 자를 말한다.

-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시

- 3. 건축 · 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 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 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 10, 10.>]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 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 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 3. 광고주
- 4. 옥외광고사업자
-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
 - 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10.]

[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 10. 10.>]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 10. 10.>]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한다.
-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본조신설 2021. 5. 4.]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6.>

-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목개정 2016. 7. 6.]

[제42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2. 14.>

[전문개정 2011. 10. 10.]

[제46조에서 이동 <2011. 10. 10.>]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시

-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